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8회 임시회

심사보고서



2021. 3.

기획행정위원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3. 9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서민우 의원 등 7명(이영빈,조복희,이신자,배지훈,정창근,김귀화)
- 발의일자: 2021. 2. 17.
- 회부일자: 2021. 2. 25.
- 상정 및 의결: 제27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3. 9.)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방안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임무(안 제1조 ~ 제2조)
- 위촉 및 해촉(안 제3조 ~ 제4조)
- 운영(안 제5조)
- 예우 및 보상(안 제6조)
- 저작권 귀속 등(안 제7조)
- 품위유지 등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2. 17. ~ 2021. 3. 2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달서구 홍보 대사의 위촉·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, 홍보대사의 임무·위촉 등 품위유지,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·외에 구정홍보를 활성화 하여 달서구 위상을 제고하고,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제3조(위촉) 및 제5조(운영)는 행정의 다양화 시대에 맞게 특정 분야 전문가 위촉 및 활용을 위해 별도의 위촉과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- 홍보대사에 대한 활용 계획이 미흡하고, 기존 홍보대사에 대한 홍보 활용도가 낮음. 실제적으로 홍보효과가 높고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바람.
- 유명세 보다 각 분야 전문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.
- 무보수 명예직이기에 섭외나 홍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음.
- 홍보대사가 스스로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컨텐츠 제작 등을 뒷받침 해 주었으면 함.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 특정분야 명칭을 활용한 ○○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.

〈수정안 조문 대비표〉